지적재산권 관리지침

제정 2009. 8. 17. 개정 2013. 9. 1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"진흥원"이라 한다)이 소유하는 지적재산 권에 대한 출원, 등록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진흥원의 사업수행결과로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외부기관과의 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"지적재산권"이라 함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등록권, 저작권, 컴 퓨터프로그램보호권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.
- 제4조(지적재산권 등록신고) 사업을 수행하여 지적재산권 관리대상 결과물을 산출한 부서에서는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기술문서, 논문, 연구보고서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리는 자료관리규칙에 따른다.
- 제5조(지적재산권 발굴) 사업수행부서장은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적재산권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출원 및 등록) ① 사업수행부서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국제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검토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**제7조(관리)** ① 사업관리부서장은 사업수행부서장과 협의하여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그 권리의 유지, 갱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수행부서장은 제6조에 의하여 출원,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. 단, 국제특허의 경우에는 사업관리부서 검토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1. 지적재산권이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

- 2. 지적재산권 취득 이후 현저히 발전된 상위기술의 개발로 보유가치가 없는 경우
- 3. 기타 사업수행부서장이 폐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

제8조(외부전문가의 자문 등) 사업수행부서장은 사업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지적재산 권 출원, 등록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변리사, 변호사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,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 9. 1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